

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
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에서는 산·학·연·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음.
- 나.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2) 대 표 자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사장 장세용
- 3) 소 재 지 :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
- 4) 출연예정액 : 13억원
- 5) 출연금 사용처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

나. 주요 사업

1) 수준 높은 시험·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운영사업 : 5.5억원

-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시험·분석 연구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 이용 기업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업그레이드 비용 증가
-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저렴한 장비 이용수가 적용과 KOLAS 인증 유지 및 서비스 확대 추진
- 장비업그레이드 및 영선유지를 통한 장비 활용률 향상 및 입주 기업 등에 장비사용 할인 제공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

2) 우수기업 발굴·유치를 위한 임대·시설운영사업 : 7.7억원

-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기술원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및 감면 추진
- 노후화된 건물(시설물) 개선, 에너지 절약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한 고효율 LED등 교체로 최적의 입주공간과 연구환경 조성
- 기업 애로 해결 및 맞춤형 기업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잠재력 있는 지역 우수기업을 발굴·유치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
- 기술원 보유 지식정보 공유 및 기업홍보체계 활성화를 통한 기업과 협력성장, 공동연구개발 등 수요자 중심 기업 지원 강화

다. 출연의 필요성

1) 수준 높은 시험·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운영사업 지원 필요

- 2003년부터 구축된 기술원 보유 시험·분석 장비의 84.9%는 5년 이상 노후화 되었고, 연구장비 노후화에 따라 지역 기업을 위한 수준 높은 시험·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발생
- 이용 건수 증가('17년 9,088건 → '20년 13,188건)에 따라 부품 및 소모품 교체비용 등 장비 유지보수비는 동반 상승하고 있으나, 타기관 대비 평균 54% 이상 저렴한 장비이용수가 적용으로 기관 및 장비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 발생

< 연구장비 현황 요약 >

(단위 : 대, 백만원)

부서명	장비구축현황					비고
	2016년도 이전 구축		2016년도 이후 구축		노후화율	
	장비수	금액	장비수	금액		
시험분석연구센터	85	13,003	-	-	100%	시험·분석
융복합소재연구센터	72	11,434	-	-	100%	공정·테스트
미래이동통신연구센터	43	51,078	11	23,282	80%	"
실감미디어연구센터	11	9,451	6	1,610	65%	"
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	76	7,329	22	2,254	78%	"
지능형웨어러블연구센터	-	-	12	8,042	0%	"
합계	287	92,295	51	35,188	84.9%	

※ 노후화율(%) = 2016년 이전 구축 장비 대수 ÷ 전체 장비대수

<장비지원 수입과 지출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`18	`19	`20	`21	`22	비 고
수입	장비수입[A]	1,425	1,645	1,750	1,889	2,028	
지출	지출 합계[B]	1,920	2,195	2,300	2,439	2,578	
	공공요금	722	735	750	772	814	
	유지보수비용	598	840	900	973	1,026	
	장비부서 인건비	600	620	650	694	738	
차이 [A]-[B]		-495	-550	-550	-550	-550	

- 기업 수요에 맞춘 장비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 실시로, 지역 기업이 타지역 연구기관을 이용해야 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, 수준 높은 시험·분석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
- '21년 장비운영사업비 지원 활용 실적
 - 장비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'20년 3.06억원 및 '21년 5.15억원(예상)
 - 국제공인시험기관(KOLAS) 인증 범위 유지(0.36억원),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, Eco-Lab, 국내 완성차 3社 전자기접합성(EMC) 인증시험기관 등 공인시험기관 자격 유지 및 시험분석서비스 제공
 - 장비활용 기업수탁과제 4건(2.6억원) 발굴 및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진행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

2) 우수기업 발굴·유치를 위한 임대·시설운영사업 지원 필요

-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·유치·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타 기관 대비 최대 16% 저렴한 임대료 책정 운영

* 코로나19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'20년, '21년에 이어 감면 지속지원

- 매년 증가하는 시설운영비 부담을 임대 수입으로 보전하기 위해 타기관 대비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나 2015년부터 매년 동일한 임대단가 적용

* 입주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로 현행 임대단가를 유지하고 있어 시설 운영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

< 유사기관 임대단가 비교 >

(단위 : 원/㎡)

기관명	평균 월 임대단가	비고
구미전자정보기술원	6,065	
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	6,822	대비 12% ↓
금오공대 창업진흥센터	5,980	대비 1% ↑
대구테크노파크	7,270	대비 16% ↓

※ 임대 전용면적 기준 환산 단가

- 노후화된 시설의 영선·유지를 위한 시설 유지 보수비 증가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임대시설 공용면적의 관리비 증가로 지속적인 어려움 발생, 기술원 자체 대응의 한계가 있음

< 시설임대 수입과 지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22년	'21년	비 고
임대율		75%	70%	
수입	수입 합계[A]	3,379	2,696	
	임대수입	2,605	2,037	
	기술원 자체 대응분	774	659	
지출[B]		4,129	3,446	
차 이 [A]-[B]		-750	-750	

※ 임대건물 : 진흥관, 혁신관, 성장관, 이노플라자, 국산화센터 등 총 9개동

※ '21년 현재 입주율 및 기업수 : 81.6%, 164개사(650여명)

-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준공에 따라 전자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면서, 잠재력 있고 우수한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,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시설운영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
- '21년 임대·시설운영사업비 지원 활용 실적
 - 코로나19로 지역기업의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'20년, '21년에 이어 임대료 감면 지속 지원
 - '21년 153개 기업에 382.7백만원 지원 예상

< 연도별 입주기업 지원현황 >

년도	구 분	지원내용	지원기간	감면금액 (백만원)	기업수	비고
2020	임대료 감면	임대료 30%	'20.4~12월 (9개월)	273	159	실적
2021	임대료 감면	임대료 50%	'21.7~12월 (6개월)	375	153	예상
	연체료 경감	연체기간에 따라 5~10% → 2.5~5% (50% 경감)	'21.1~12월 (12개월)	7.7	-	

- 전자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운영 활성화 및 우수한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
 - 건물 내 홍보 안내판 구축 및 입주기업 홍보관 활성화
 - 입주율 '20년 28%에서 '21년 9월기준 85.8%로 증가
- 노후화된 시설 및 입주기업 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 추진
 - 진흥관, 혁신관 등 건물 외벽 및 입주공간 내부 도색, 단지내 노후화된 차선 도색, 방수층 손상 및 누수부 개선, 헬스장 및 샤워시설 등 개선 및 입주기업에 개방
- 연구실 바닥 개선, 전기에너지 절약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한 고효율 LED등 교체로 탄소중립 실현(매년 점진적 확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본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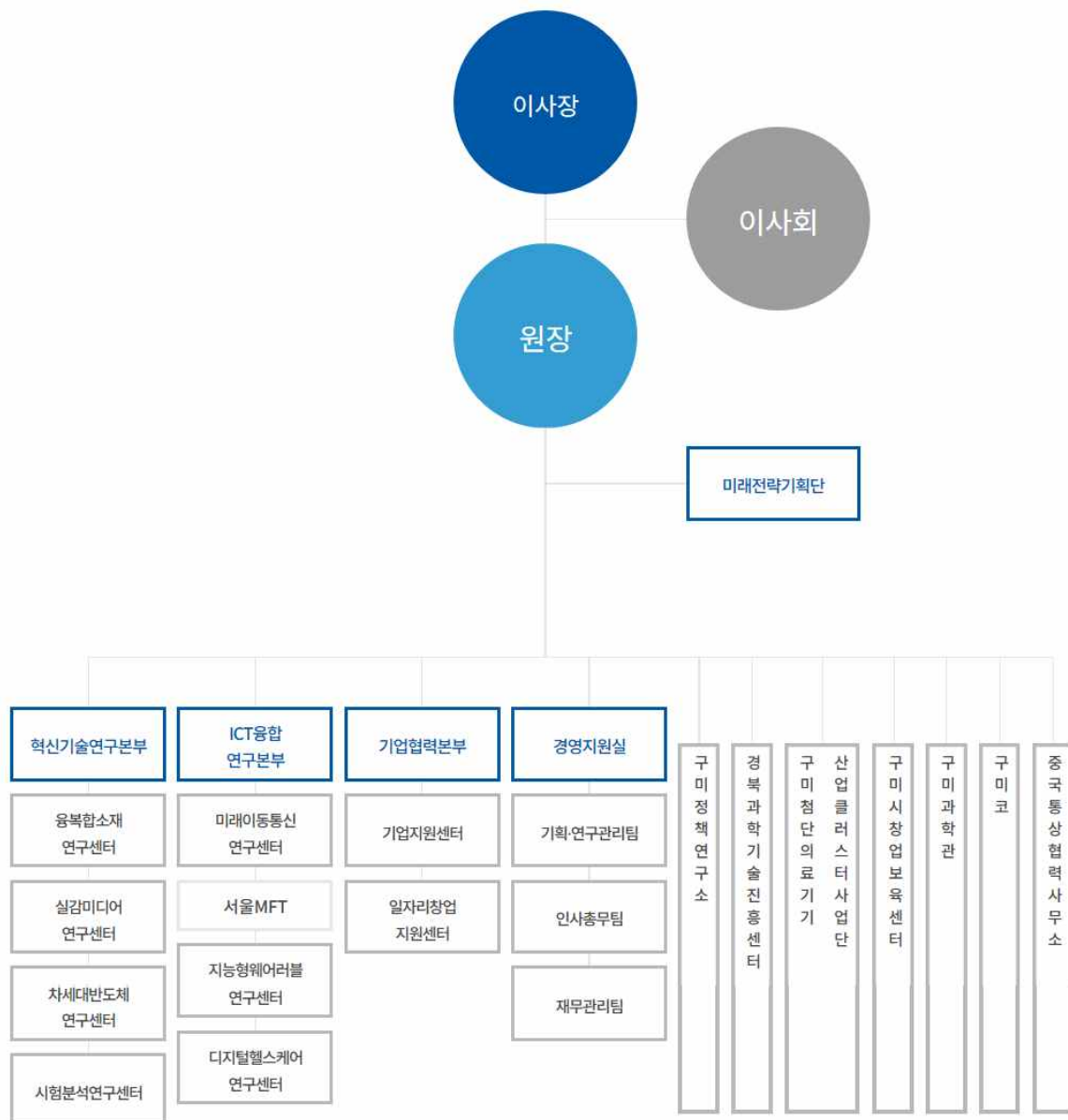
라. 기 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(붙임)

□ [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

①기관명(주소)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(주소)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			
②기관소개	○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및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○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		
③설립근거	○ 법 률 : 민법 제32조 ○ 규 칙 :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○ 조 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		
④연 혁	○ 설립일자 : 2007. 7. 30. ○ 기관명칭 변경 : 해당없음	⑤관계기관	○ 산업통상자원부
⑥주요기능	○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○ 산·학·연·관 지역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협력거점 구축 ○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○ 지역 전자정보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및 집행 ○ 제품의 규격·성능시험·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사업 등		
⑦기관장 소개	○ 성 명 : 장세용 ○ 학 력 : 영남대학교(사학) 박사 ○ 경 력 :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구경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現)구미시장		
⑧조직 기구도	*별첨 참고		
⑨공시책임자	○ (담당자)(소속) 인사총무팀 (직책·성명) 선임 박아론 (전화) 054)479-2015 ○ (확인자)(소속) 인사총무팀 (직책·성명) 팀장 박성원 (전화) 054)479-2012		

[별첨]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조직기구도

□ 기 구 : 3 본부, 1 지원실, 1 기획단

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□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
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(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"산업기술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 장비·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

등에 관련된 기술

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 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 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 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 마케팅·비즈니스 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 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 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 10. 삭제 <2013.3.23.>
 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 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 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 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-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

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 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 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 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 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·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은 "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 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 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 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신성장산업과
입 안 자	과 장	박 노 돈
	담 당	신 주 선
	담 당 자	김 은 정 (480-6152)